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시에서는 모바일·디스플레이·전자의료기기 등 풍부한 ICT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IOT융합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대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2) 대 표 : 남유진
- (3)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 (4) 출연예정액 : 금70,000천원

※ 3차년도('18. 4월 ~ '19. 3월) 소요예산 중 시비 대응자금

나. 주요 사업

(1) 사업명 : 스마트창작터 사업

(2) 사업기간 : 2016. 6월 ~ 2019. 3월(34개월)

(3) 사업위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금오테크노밸리 내)

(4) 총사업비 : 15.6억원 (국비 13.5, 시비 2.1)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 계획			비고
		'16년	'17년	'18년	
계	15.6	5.2	5.2	5.2	
국 비	13.5	4.5	4.5	4.5	
시 비	2.1	0.7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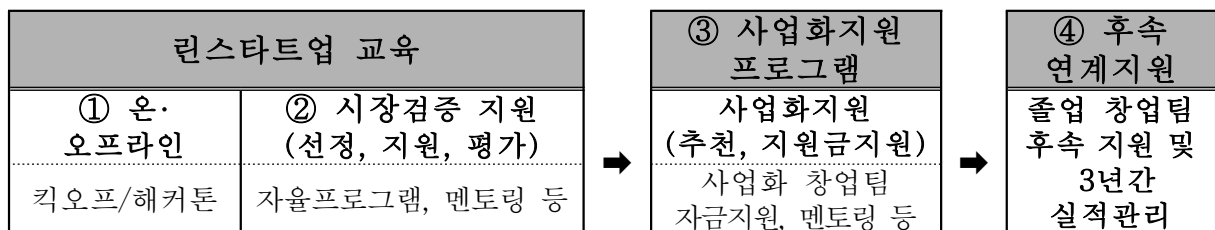
(5)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6)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7)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 및 사업모델검증 지원
- 창업팀 구성 및 사업화 지원
- 졸업 창업팀 후속연계지원

<스마트창작터 프로그램 구성개요>



※ 린스타트업(Lean startup) : 만들기 측정 학습(이후 계속 반복)

-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시제품)으로 제조한뒤, 시장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

(8)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6년(5.2억)	2017년(5.2억)	2018년(5.2억)
세 부 목 표	해외진출을 지향하는 글로벌 창업팀 육성	해외 진출관련 지원 (2건)	해외 진출관련 지원 (4건)	해외 진출관련 지원 (6건)
	지역전략산업/강점분야 연계형 ICT 융합 창업생태계 구축	사업화 도출 (5개팀 중 2개팀)	사업화 도출 (5개팀 중 3개팀)	사업화 도출 (5개팀 전원)
	창업자 지속적 이력관리 및 성과 확산	졸업팀 대상 추가지원 프로그램 준비	2016년도 졸업팀 대상 내외부 사업화 지원 (3건)	2017년도 졸업팀 대상 내외부 사업화 지원 (5건)
매년 사업수행내용		(1단계) 온오프라인 창업실습교육생 모집(200명내외) (2단계) 시장모델검증 40개팀내외 선정 및 지원 (3단계) 창업 8개팀내외 선정 및 사업화 지원		

(9)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4~'15년 : 1단계 스마트창작터 사업 수행

※ (주요성과) 2년연속 우수 수행기관 선정, 창업 9개사, 신규고용창출 14명, 해외진출 3개사 등

- '16. 5월 : 선정평가 및 신규 주관기관으로 선정

※ (기존) 30개 → (신규) 18개 선정

- '16. 6~'17. 3월 : 1차년도 사업수행

- (1단계) 킥오프 및 멘토링 워크숍 개최
- (2단계) 멘토링 워크숍 및 수료캠프 개최(33개팀)
- (3단계) 진출팀 선정(전담기관) 및 사업화 수행(6개팀)

- '17. 3월 : 2차년도 상반기 교육생 모집
- '17. 4월 : (상반기 1단계) 온오프라인 교육실시
- '17. 5월 : (상반기 2단계) 시장검증 실시(25개팀)
- '17. 6월 : (상반기 3단계) 진출팀 선정(5개팀)
- '17. 7~11월 : (상반기 3단계) 선정된 창업팀 사업화 수행
- '17. 7월 : 하반기 교육생 모집
- '17. 8월 : (하반기 1단계) 온오프라인 교육실시
- '17. 9월 : (하반기 2단계) 시장검증 실시(24개팀)
- '17. 10월 : (하반기 3단계) 진출팀 선정(5개팀 제외)
- '17. 11~'18. 3월: (하반기 3단계) 선정된 창업팀 사업화 수행
- '18. 4~'19. 3월: 3차년도 사업수행

다. 출연의 필요성

- (1) 창조경제 시대 도래로 대량생산체제 기반의 고용 창출보다는
창업팀 육성이 새로운 고용창출 대안으로 부상
- (2)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자의료기기 등 기보유 인프라를
활용·융합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하여 창업 활성화
- (3)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지원체계 구축으로
강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지속적 진출기회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주요사업 실적

주요사업 실적

□ 총괄 추진실적(2016년 ~ 2017년 8월말 기준)

- 창업팀 15개사 창업완료('17년 하반기 4팀 포함)
- 2단계 시장검증 82개팀 지원
- 교육생 277명 수료

□ 세부 추진실적(2016년 ~ 2017년 8월말 기준)

○ (1단계) 온오프라인 창업실습교육

년도	창업실습 교육 수료자	멘토링 지원	전문교육 수료자 (IoT, 회계, 경영 등)	관련 지원프로그램 (키오프, 워크숍 등)	교육홍보
2016	64명	19건	71명	13회	64건
2017	102명	183건	40명	8회	39건
계	166명	202건	111명	21회	103건

○ (2단계) 시장검증

년도	시장검증 지원	멘토링 지원	우수사례 홍보
2016	33팀	21건	3건
2017	49팀	78건	2건
계	82팀	99건	5건

○ (3단계) 사업화지원

년도	창업팀 지원 (신규창업)	매출액	신규고용	지재권 출원	멘토링 지원
2016	6팀(3팀)	약 6억원	4명	8건	14건
2017	9팀(4팀)	-	8명	-	-
계	15팀(7팀)		12명		

※ 2017년 매출액, 지재권, 멘토링지원수는 사업종료시점에 집계 예정

□ 주요성과

- 3년 연속(2014~2016년) 전국 우수 수행기관 선정
- 매출 및 신규 고용창출(2017년 8월말 기준)
 - 580,580천원 매출 및 12명 신규고용 창출

< 2016년 기업별 매출현황 >

기업명	매출액(천원)	비고
하은에너지기술	229,194	구미
루미나래	148,132	구미
크레마테크	121,300	구미
케어차일드	57,454	구미
수현MS	24,500	구미
계	580,580	

- 기타 주요성과
 - 인도 첸나이 타운스토리 현지 도입을 위하여 VAISEN INDIA와 MOU 체결(수현MS 우장현 대표)
 - (국내외시장진출) 2016벤처대전 및 영국 박람회 참석
 - 매출증대를 위한 구매의향서 4.4억 체결(루미나래 김대운 대표)
 - (사업 성공률 제고 및 연속성 확보차원) 내외부 후속사업 20건 연계지원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이창형
	담 당	권기열
	담 당 자	이지영 (480-6144)